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22

제출연월일 : 2008. 4. .

발 의 자 : 김 영 길의원외 2명

1. 제정이유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함.(안 제3조)
- 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다. 구청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

3. 근거법규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4조

나. 노인복지법 제1조, 제4조

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2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제4조

마. 의료급여법 제3조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3조

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장애인세대”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부모세대”라 함은 부모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2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4. 11(금)
- 나. 제출자 : 김영길 의원외 2명
- 다. 위원회 회부 : 2008. 4. 16(수)
- 라. 위원회 상정 : 2008. 4. 21(월)

3.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길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 경제적인 부담으로 건강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함(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구청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함(안 제6조)
-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함(안 제8조)
-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종진)

- 본 조례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저성장,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액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우리구에는 1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2008년 3월말 현재 약 835여명이고 연간 지원액은 약 5,900만원 정도이나 대상자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재원을 순수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5.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65세이상 노인세대 (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68세이상 노인세대 (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삭제) 주민등록상 만68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p> <p>2. (제정안과 같음)</p> <p>3.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정안과 같음)</p>
<p>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